

광주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11178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나7721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11178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연주

변론종결 2023. 2. 21.

판결선고 2023. 4. 25.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2021. 4. 20.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20,388,21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15,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2022. 4. 4. 이후 발생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5,872,956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D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3항의 5,872,856원은 5,872,956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21. 1. 20. C에게 20,000,000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24. 1. 20., 이자율 기준금리 + 연 6.92%, 대출금 상환방법 2021. 2월부터 매월 36회에 걸쳐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C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21. 5월분까지의 분할상환금을 납인한 후 분할상환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 2021. 10. 20.자 2021차전115785호로 C에 대하여 2021. 10. 6.까지의 원리금 18,422,342원(원금 17,777,760원 + 미수이자 644,582원) 및 그 중 17,777,760원에 대하여 2021. 10. 7.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1. 10. 25. C에게 송달되어 2021. 11. 9. 확정되었다.
- 피고는 아버지인 C에게 2018. 10. 20. 2,500,000원, 2019. 3. 14. 59,000,000원, 2019. 11. 29. 30,000,000원, 2020. 2. 13. 20,000,000원, 2020. 6. 15. 44,000,000원, 2021. 1. 6. 95,000원, 2021. 4. 5. 1,000,000원 합계 156,595,000원을 송금하였다.
- C은 2021. 4. 20.자로 피고에게 2018년부터 당시까지 빌려간 원금 160,000,000원을 2021. 5. 30.까지, 지연이자 연 7%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교부하였다. ○ 피고는 이 법원 2021.

6. 23.자 2021차전109092호로 C에 대하여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1. 6. 28. C에게 송달되어 2021. 7. 13. 확정되었다.

○ 피고는 이 법원 2021. 6. 29.자 2021카단51760호로 2021. 4. 20.자 160,000,000원 약정금을 청구채권으로 C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 법원 2021. 8. 6.자 2021타채69475호로 16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21. 8. 25. C에게 송달되어 2021. 9. 2. 확정되었다.

○ D은 2021. 7월분부터 2022. 2월분까지 피고에게 C의 급여압류금액 14,515,26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이 법원 2022. 4. 5.자 2022카단378호로 피고의 D에 대한 이 법원 2021타채6947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 중 청구채권 19,304,868원 상당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다.

○ 2021. 4. 20. 채무변제계약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광주 광산구 E, F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C은 2021. 6. 2. G에게 위 아파트를 거래가액 133,500,000원에 매도하고 2021. 6.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C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금융기관	발생일	채무액	채무구분
A	2021. 1. 20.	17,777,000	신용대출
	2021. 1. 20.	6,777,000	H 지급보증서 대출
I은행	2020. 11. 17.	28,310,000	신용대출
	2017. 12. 15.	55,844,000	부동산담보대출
J카드	1992. 5. 13.	907,000	카드이용대금
K카드	2020. 10. 5.	13,320,000	카드이용대금
L카드	2003. 3. 25.	121,000	카드이용대금

M은행	2018. 7. 11.	39,537,000	신용대출
피고		160,000,000	대여금
합 계		322,593,000	

○ 2022. 10. 13.까지 원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20,388,216원(원금 17,777,760원 + 미수이자 2,610,45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 이 법원의 N에 대한 신용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보성군에 대한 과세정보제출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원고와 C 사이에 이미 2021. 1. 20. 대출약정에 의하여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C은 2021. 6월분부터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그 기한이익상실 약 2달 전에 이루어진 2021. 4. 20. 채무변제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2018. 10. 20.부터 2021. 4. 5.까지 합계 156,595,000원을 송금하였고, C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연체 2달 전인 2021. 4. 20. 피고와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근거로 C에 대하여 2021. 6. 23. 지급명령을 받고 2021. 6. 29. C의 D에 대한 급여채권을 가압류한 후 2021. 8. 6. C의 위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C과 피고의 채무변제계약은 피고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신용회복을 하여 C으로부터 14,095,815원을 지급받고 신용회복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C의 신용회복으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채무자의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음을 발행받은 수익자가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에까지 나아간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인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의 결과 수익자가 얻은 환가금이나 추심금 또는 전부금의 반환이나 전부채권의 양도를 원상회복으로서 구할 수 있지만, 아직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어음채권을 취득한 것 외에 어떤 구체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채무명의를 얻은 것 자체를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채무명의의 반환이나 인도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C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2022. 2월까지 D으로부터 전부금으로 14,515,260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피보전채권으로 2022. 10. 13.까지 대출원리금 20,388,216원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2021. 4. 20.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피보전채권 20,388,21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실제 수령한 전부금 14,515,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C에게 2022. 4. 4. 이후 발생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5,872,956원(20,388,216원 - 14,515,26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D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석

별지